국토교통부		보도해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8. 14(수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명섭, 사무관 박진홍, 최민석, 임유현 • ☎ (044) 201-3318, 3320, 3321, 4129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제도는 바뀌는 것이 없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**기존에도** 증가하는 세대 수가 **30세대 이상**으로 **입주자모집 승인의 대상**이 되는 경우에는 **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**이었고, 이번에 입법예고된 「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.

□ 또한,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도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.

○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효력은 **기존에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***하였고, **이는 개정**(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으로 일원화) **이후에도 동일**합니다.

* 기존에는 '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분'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으로 예외를 두었고,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

< 관련 보도내용(8.15. 매일경제) >

◈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 폭탄...예외조항 슬그머니 뺐다
- 기존에는 주택조합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조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했으나, 이번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삭제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박진홍 사무관(☎ 044-201-3318), 최민석 사무관(☎ 044-201-33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